

창원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나646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에이치, 담당변호사 박찬우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9. 22.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10. 14. 선고 2020가단10749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경남 함안군 C 전 1,269㎡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8.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8. 8. 22. 접수 제145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3쪽 제4행 ‘12호층’ 뒤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나.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1행 ‘13,705,200원’ 뒤에 ‘= 2018년 공시지가 21,600원 × 1,269㎡ × 1/2 지분’을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8행 ‘구속기소된 점’ 뒤에 ‘B은 피고 외에 다른 처형인 I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I 명의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허위 급여 및 퇴직금 합계 145,645,961원을 송금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아’를 추가한다.

라.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9행 ‘볼 것인 점’ 뒤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인 경남 함안군 C 전 1,269㎡의 나머지 1/2 지분은 B의 처인 J의 소유인데, J의 지분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적정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시한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B과 J가 2016. 9. 20. 위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거래가액은 183,400,000원임에도 피고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8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점’을 추가한다.

마.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행 ‘6’을 ‘9’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 득 관, 판사 윤 정, 판사 이큰가람